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법률 제14477호, 시행 2017. 1. 1.)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 통보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2조)

나. 기업도시 개발 등에 대한 감면율 변경 (안 제8조)

다. 시장현대화사업에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안 제9조)

라.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제1장 총칙, 제2장 감면, 제3장 보칙, 부칙으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기획감사실-2653(‘17.3.20)〕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17624(‘17.3.21)〕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기간: ‘17.3.23～ ’17.4.12〕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 개정 내용으로

- 안 제2조의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안 제9조의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로 위임된 조항을 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시한 연장과 감면율 조정 등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자치입법 심사기준 및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전부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